

## 월간 자본시장 제도동향

2023년 11월호

### 1. 법률

가.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

### 2. 한국거래소 규정

가.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

나.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

### 3. 금융투자협회 규정

가. 금융투자회사의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

나. 방문판매 모범규준

다. 신용거래설명서



## 1. 법률

가.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(방문판매 · 전화권유판매 관련 준수사항 신설)

## 1. 법률\*

### 가.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(2023/10/4 개정 · 2023/10/12 시행)

#### 1) 개정 이유

-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19532호, 2023. 7. 11. 공포, 10. 12. 시행)됨에 따라,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
  -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방문판매 · 전화권유판매 방식으로 금융상품을 판매하려는 경우 임직원 명부를 작성하도록 하고, 일반금융소비자가 연락금지를 요구하면 그에 따른 위한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등의 내용 개정

#### 2) 주요 내용

-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임직원 명부 작성(제10조의2 제1항 신설)
  -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방문판매 · 전화권유판매 임직원의 성명(등록한 금융상품판매대리 · 중개업자인 임직원의 경우 등록번호 포함) · 소속 및 전화번호가 포함된 임직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함
-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관련 준수사항(제16조의2 신설)
  -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구두에 의한 방법으로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연락금지요구권과 그 행사방법 및 절차를 알린 경우에는 알린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이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리도록 함
  -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에게 연락금지 요구의 대상 및 내용을 특정하여 연락금지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, 연락금지 요구를 받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에 따른 조치를 완료하도록 함
  -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연락금지요구권 행사에 따라 발생하는 금전적 비용을 일반금융소비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수신자 부담 전화 등의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

\*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법제처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됨

□ 과태료 부과기준(별표 4 제2호 나목·차목 및 카목 신설)

-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를 하려는 임직원의 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법인인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에게는 3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

선임연구원 신경희(02-3771-0854, skh0828@kcmi.re.kr)

## 2. 한국거래소 규정

가.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(상장지수펀드증권 · 상장지수증권 소수점 배율 상장 허용)

나.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(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· 상장지수증권 호가가격단위 개편)

## 2. 한국거래소 규정\*

### 가.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(2023/10/17 개정 · 2023/12/11 시행)

#### 1) 개정 이유

- 상장지수펀드증권 · 상장지수증권의 순자산가치 · 지표가치가 소수점 배율로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변화에 연동하는 것을 허용하고 관련 기준을 정비하기 위함

#### 2) 주요 내용

- 상장지수펀드증권 · 상장지수증권 소수점 배율 상장 허용(별표 2의3, 별표 2의5)
  - (상장지수펀드증권) 레버리지 · 인버스 상품이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변화에 연동하는 배율은 정수배율(음의 정수배를 포함)로서 2배를 넘을 수 없으나, 정수배율 상장기준을 개정하여 소수점 배율 상품 상장을 허용
  - (상장지수증권) 레버리지·인버스 상품이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변화에 연동하는 배율은 0.5배율 단위(음의 배율을 포함)로서 2배(기초자산이 채무증권인 경우 3배)를 넘을 수 없으나, 0.5배율 단위 상장기준을 개정하여 소수점 배율 상장을 자율화
  - (공통) 소수점 배율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가능

### 나.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(2023/10/17 개정 · 2023/12/11 시행)

#### 1) 개정 이유

- 저가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· 상장지수증권의 호가가격단위를 1원으로 개편하고, 관련 기준을 정비하기 위함

\*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한국거래소 규정 및 한국거래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

## 2) 주요 내용

- 상장지수집합투자지구 집합투자증권 · 상장지수증권의 호가가격단위 개편(제32조 제2항)
  - 2천원 미만의 상장지수집합투자지구 집합투자증권 · 상장지수증권의 호가가격단위를 5원에서 1원으로 개편
  - 주권(외국주식예탁증권, 신주인수권증서, 신주인수권증권, 수익증권 포함), 상장지수집합투자지구 집합투자증권 · 상장지수증권 및 주식워런트증권을 별도 호로 구분

선임연구원 신경희(02-3771-0854, skh0828@kcmi.re.kr)

### 3. 금융투자협회 규정

- 가. 금융투자회사의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기준 (투자자예탁금 이용료의 합리적 산정을 위한 필요사항 제정)
- 나. 방문판매 모범기준 (방문판매인력명부 관리 적정성 제고방안 반영)
- 다. 신용거래설명서 (CD수익률 산출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필수 설명사항 반영)

## 3. 금융투자협회 규정\*

### 가. 금융투자회사의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기준 (2023/10/12 제정 · 2023/11/1 시행)

#### 1) 제정 이유

- 금융투자회사가 투자자예탁금 이용료를 투자자에게 지급함에 있어 이용료율을 합리적으로 산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

#### 2) 주요 내용

##### 적용 대상(제1조)

- 금융투자회사 중 증권회사 및 선물회사가 적용
  - 겸영금융투자업자 및 집합투자업자는 제외

##### 직 · 간접비 구분 및 비용배분방식(제4조)

- 금융투자회사가 예탁금 이용료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
  - (직접비) 예금자보험료 등 예탁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
  - (간접비) 감독분담금 등 예탁금 외의 업무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비용(공통비)
- 직접비는 비용에 전액 배분되고 간접비는 합리적 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배분

##### 이용료율 산정주기(제5조)

- 시장금리 변동 등을 감안하여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을 분기 1회 이상 재산정

\*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

□ 내부심사위원회 심사(제6조)

- 소비자보호 등 예탁금 이용료 관련 부서로 구성된 내부 심사 위원회를 통해 이용료를 산정내역의 적정성을 심사
  - 이용료를 재산정시 대표이사 결재(또는 사전보고)를 받도록 정함

□ 이용료율의 비교공시(제8조)

-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재산정 결과가 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될 수 있도록 근거 마련

## 나. 방문판매 모범규준 (2023/10/12 개정 · 시행)

### 1) 개정 이유

- 방문판매 제도화 등 금융소비자 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(시행 2023.10.12.) 내용 및 방문판매인력 명부 관리 적정성 제고 방안을 「방문판매 모범규준」에 반영

### 2) 주요 내용

- 방문판매인력 명부 작성 · 유지 · 관리 담당직원 지정(제6조 제3항 신설)
  - 방문판매인력의 인적정보의 정확 · 적시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방문판매인력 명부 작성 · 유지 · 관리 직원(실무자 및 관리자) 지정의무
    - 자격보유내역, 직무(보수)교육이수내역, 연락처, 근무형태(임직원 또는 투자권유대행인) 등
- 방문판매인력 명부 관리의 적정성 점검(제6조 제4항 신설)
  - 회사는 방문판매인력 명부에 대한 적정성을 주기적(연 1회 이상)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보완 등 조치
- 연락금지요구권 구두 안내시 추가 안내(제8조 회사참고사항 8)
  - 고객에게 연락금지요구권을 구두로만 알린 경우 알린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서면, 전자우편, SMS 등으로 추가 알림
- 자료열람 요구시 열람기한 8일에서 6영업일로 변경(제19조 제2항)
  - 금소법 시행령 개정(2023.8.1.) 사항 반영

## 다. 신용거래설명서 (2023/10/4 개정 · 2023/10/5 시행)

### 1) 개정 이유

- CD수익률이 「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중요지표로서 지정 · 효력 발생됨에 따라 동 법령 및 하위 규정(CD수익률 산출 업무규정)에서 정하는 필수 설명사항 등을 반영하여 신용거래 설명서를 개정
  - 다만, 동 개정안은 CD수익률을 신용거래 이자율 산정시 기준 금리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함

### 2) 주요 내용

- 「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하위규정에서 정하는 설명의무 사항들의 설명서 반영
  - (기준금리 명시) 신용거래 이자율 산정시 기준금리에 CD수익률을 사용함을 명시
  - (고객확인 사항 반영) CD수익률에 대한 주요 설명사항 등에 대해 설명 받았음을 확인하는 내용 반영
  - (CD수익률 의무 설명사항 반영) [참고] CD수익률 설명서를 추가하여 관련 법령 및 하위규정에 따른 설명의무 사항들을 반영

선임연구원 신경희(02-3771-0854, skh0828@kcmi.re.kr)